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8. 29) 상정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8. 29)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부과과장 권 희 춘)

가. 제안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따라 시달된 표준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를 광주민주화 운동유공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까지 확대함. (안 제2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66호
의결 년월일	2003. 9. 3 (제106회)

제출연월일 : 2003. 8. 2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하고 시달된 세제13400-389(2003.5.7)호 및 세제13400-630(2003.6.8)호의 표준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 임.

□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를 광주민주화 운동유공 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까지 확대함. (안 제2조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및 4. (생략)</p> <p>③ (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p> <p>-----</p> <p>-----</p> <p>-----</p> <p>-----</p> <p>-----</p> <p>-----</p> <p>-----</p> <p>1. 및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